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46호 2026. 6. 22. (월)

공 고

○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

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만호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

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만호동 주민
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7일

목포시 만호동장인



☐ 위촉사항

연 번	직 위	이 름	성 별	위촉일	비 고
1	위 원	박창수	남	'26. 6. 11.	